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2004
번호 -13

제출년월일 : 2004. 4. .

제 출 자 : 김 제 시 장

1. 개정이유

지방세법 개정(지방세법중개정법률 2003. 12. 30 법률 제7013호)에 따라 시세조례를 지방세법령의 체계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을 현행 6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변경하고,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 회의마다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 납세고지서 송달의 방법에 직접교부와 등기우편 이외에도 정기분 지방세중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우편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제3항 신설)
- 종전에는 신고납부 세목인 주민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사업소세의 경우 신고납부를 하여야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나, 앞으로는 신고와 납부를 구분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적용함.
(안 제21조, 제40조의4, 제60조, 제98조)

○ 자동차세 과세기간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등록하는 경우 양수자가 일할계산을 신청해야만 사용한 날만큼 자동차세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함
(안 제39조, 단 2005. 1. 1부터 시행)

○ 현재 교통세액의 1000분의 149.5인 주행세의 세율을 유류세 인상애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의 재원확보 등을 위하여 1000분의 175로 인상함 (안 제40조의3)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2003년 개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부

다. 협의 등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4.2.2~2.23) : 특기사항 없음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김제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고, 적부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51조의2제1항 단서에서 정한 방법이라 함은 우편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고지서의 우편발송을 증명할 수 있도록 송달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의 우편물 접수인을 날인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의 제목“(신고납부)”를“(신고 및 납부)”로 하고, 동조제1항중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을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로, “신고납부하여야”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로,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로 하며, 동조2항중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산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인세할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법 제17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동조제4항중 “산출한 세액”을 “산출세액”으로, “100분의 20을 가산한”을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으로 한다.

제3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6조의6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제39조제3항중 “자동차세 과세기간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한다.”를 “자동차세 과세기간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경우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한다.”로 한다.

제40조의3제1항중 “1,000분의 149.5”를 “1,000분의 175”로 한다.

제40조의4의 제목 “(신고납부)”를 “(신고 및 납부)”로 하고, 동조중 “신고납부”를 “신고하고 납부”로 한다.

제60조의 제목 “(신고납부 등)”을 “(신고 및 납부 등)”으로 하고, 동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중 “신고납부하여야”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로 한다.

제6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 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61조제1항제4호 본문중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을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신고납부세액”을 “신고한 세액”으로 하며, 동항제5호 본문중 “신고납부”를 “신고”로 한다.

제73조제1항중 “지가를 말한다)에 영 제194조의16제2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이 결정 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과세표준액 적용비율”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94조의16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이 개별공시지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8조제1항 및 제2항중 “신고납부하여야”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2항·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제73조제1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류송달의 방법에 의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p> <p>① (생략)</p> <p>② 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관련 5급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p> <p>1. ~ 5. (생략)</p> <p>③ ~ ⑥ (생략)</p>	<p>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고, 적부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4인이상 포함되어야 한다</p> <p>1. ~ 5. (현행과 같음)</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p>제10조의2(서류송달의 방법)</p> <p>① ~ ② (생략)</p> <p><신설></p>	<p>제10조의2(서류송달의 방법)</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법 제51조의2제1항 단서에서 정한 방법이라 함은 우편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고지서의 우편발송을 증명할 수 있도록 송달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의 우편물접수인을 날인받도록 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제21조(신고납부) ①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을 각 사업장 소재지 시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월)내에 관할 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년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년도에 불구하고 경정 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분 법인세할에 가감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21조(신고 및 납부) ①-----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 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 ----- ----- ----- ----- ----- ----- ----- ----- ----- -----신고하고 납부하여 야----- ----- ----- ----- ----- ----- ----- -----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 -----</p>

현행	개정안
<p>②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별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특별징수세액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고 납부 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③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p> <p>④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p>	<p>②----- 산출세액----- ----- ----- -----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③법인세할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법 제17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p> <p>④----- -----산출 세액-----산출 세액-----법 제121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p>

현행	개정안
<p>제3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생략)</p> <p>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납기개시 5일전까지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와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p> <p>③·④ (생략)</p>	<p>제3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현행과 같음)</p> <p>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6조의 6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39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①·② (생략)</p> <p>③자동차세 과세기간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한다. 다만,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p>	<p>제39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자동차세 과세기간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경우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한다.-----</p>

현행	개정안
<p>서 양도인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p> <p>④ (생략)</p>	<p>----- -----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40조의3(세율) ①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u>1,000분의 149.5</u>로 한다.</p> <p>② (생략)</p>	<p>제40조의3(세율) ① ----- ----- <u>1,000분의 175</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0조의4(신고납부) 주행세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p> <p>1. · 2. (생략)</p>	<p>제40조의4(신고 및 납부)----- -----<u>신고하고 납부</u>----- -----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제60조(신고납부 등) ①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영 제181조에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시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p>	<p>제60조(신고 및 납부 등) ①----- ----- ----- ----- ----- ----- -----<u>신고</u> <u>하고 납부하여야</u>-----.</p>

현행	개정안
<p><u><단서 신설></u></p> <p>1. ~ 3. (생략)</p> <p>4. 제60조의 <u>규정에 의한 신고납부</u>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경우. 다만,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5. 제60조의 <u>규정에 의한 시별 제조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u>을 허위로 신고납부한 경우. 다만,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 ③ (생략)</p>	<p><u>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u></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규정에 의하여 신고</u>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 ---<u>신고한 세액</u>----- ----- ----- ----- -----</p> <p>5. ----- ----- -----<u>신고</u>----- -----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98조(납기) ①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p> <p>②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시장에게 <u>신고납부하여야</u> 한다.</p>	<p>제98조(납기) ①----- ----- ----- <u>신고하고 납부하여야</u>---</p> <p>②----- ----- ----- --<u>신고하고 납부하여야</u>---</p>